



법규관련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05. 3. 25
발 의 자 :

제안이유

금년부터 경유승용차 시판이 허용됨에 따라 휘발유 대비 경유·LPG의 상대가격비를 환경오염, 연비, 차량가격 등을 고려하여 2005년 7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100:85:50으로 조정함으로써 휘발유 및 LPG 차량이 경유승용차로 급격히 전환되는 것을 완화하여 대기환경오염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수송용연료인 휘발유·경유·LPG의 상대가격비가 2006년 7월 기준으로 100:75:60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2007년 7월 기준으로 100:85:50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경유의 교통세액을 리터당 404원에서 480원으로 인상 조정함(안 제1조제2항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같이 국회에 제출되는 특별소비세법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동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交通稅法一部改正法律案

交通稅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리터당 404원”을 “리터당 480원”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분부터 적용한다.

③(경유에 대한 교통세율 적용의 특례) 제2조 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7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동안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다음 표상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대상	단위	적용기간 및 세율	
		2005. 7. 1 ~2006. 6. 30	2006. 7. 1 ~2007. 6. 30
제2조제1항제2호 해당물품	리터당	377원	429원

④(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第2條(課稅對象과 稅率) ①交通稅를 賦課할 物品 (이)하 “課稅物品”이라 한다)과 그 稅率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輕油 및 이와 유사한 代替油類 <u>리터당 404원</u> ②~⑥ (생 략)	第2條(課稅對象과 稅率) ①----- ----- 1. (현행과 같음) 2. ----- <u>리터당 480원</u> ②~⑥ (현행과 같음)